

2024년 청주시상지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

2024년 청주시상지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5월 22일
청주시상지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선발 예정인원	근무예정지	담당업무
기간제근로자 (방재기상지원관)	1명	충청북도청	· 자치단체 방재대응 지원 · 지역 방재 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 직무기술서 참고

※ 근무예정지는 지자체 협의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가. 신 분: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나. 계약기간: 2024. 7. 1.(예정) ~ 2025. 3. 31.

※ 3개월 미만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다. 근무기관: 충청북도청(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라.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1일 8시간(7~16시/ 휴게시간 12~13시)

마. 보 수: 월 약 249만원(식비 포함, 세금 공제 전)

바. 후생복지: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복리후생비, 명절상여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사. 실적관리: 매월 업무수행 보고서 작성·제출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 「기상청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15조(채용결격 사유) 공무원 근로자 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지자체(충청북도청 파견)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경력 또는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구분	내 용	
응시 자격	경력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자격증	기상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우대 요건	-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소지자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 (경력분야 응시자) 4년 초과 경력만 해당 . (자격증분야 응시자)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해당	
	※ 관련분야: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 기상관련 자격증: 기상기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기상감정기사 ※ 기상학분야: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등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 우대요건은 서류단계에서만 적용
- ※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해당사항 없음

【경력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인 기상예보 및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만을 의미함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과 / 자문관 / 기상예보 자문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쇄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 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4. 심사방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종합 판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선발 예정인원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나. 2차 심사: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평정요소: 전문적 능력, 공무수행 소양, 업무수행 태도, 채용분야의 적합성, 채용업무의 수행성
 - ※ 평가방식: 응시자가 준비한 5분 이내의 자기소개를 바탕으로 15분 내외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4.5.22.(수) ~6.3.(월)	'24.5.29.(수) ~6.3.(월)	'24.6.13.(목)	'24.6.19.(수) ※ 장소:청주기상지청	'24.6.26.(수)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행정누리집에 공고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행정누리집에 공고, 합격자는 개별통보(문자)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4. 5. 29.(수) 09:00 ~ 6. 3.(월) 18:00

나.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택배 불가), 전자우편(sky9740@korea.kr) 접수

- 우편접수: (우편번호 2858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76

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채용담당자

- ※ 접수 마감시간(6. 3.(월)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 우편 발송 시 결봉투에 반드시 '기간제 응시원서' 기재

- 전자우편: 제목 및 파일 제목을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_홍길동'으로 송부

- ※ 접수 마감시간(6. 3.(월)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다.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 후 응시내역은 이메일 또는 문자 전송 예정
- 라.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진행
 - ※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출원한 자는 재공고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출원한 것으로 봄

7.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

연번	제출 서류명	수량	비고
1	응시원서 ※ [붙임 1] 서식	1부	필수 제출 ※ 주민등록 초본은 남성에 한하여 제출
2	자기소개서 ※ [붙임 2] 서식	1부	
3	직무수행계획서 ※ [붙임 3] 서식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붙임 4] 서식	1부	
5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붙임 8] 서식	1부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8	자격증 사본	1부	
9	학위 증명서	1부	

- ※ 응시자격 증명서(경력 증명 또는 자격 증명)인 경우 필수 제출
-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 주민등록초본, 경력(재직)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 전자우편으로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부분은 스캔본 첨부
- ※ 군복무자의 경우 초본 대신 전역예정증명서(반드시 전역예정일이 기재되어있을 것) 제출

8.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기상청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라.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음
- 마.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 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
- 사.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아.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자. 채용 계약 후 최초 근무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근무기간이 적용되며,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차. 기타 사항은 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채용담당(☎ 043-901-7002) 연락처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나.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5]를 작성, 전자우편(sky9740@korea.kr), 팩스(043-278-0365)를 통해 신청
- 마.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예비합격자의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10. 채용비리 관련

- 가.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나.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붙임 6](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다.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붙임 7](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11.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 부서	선발예정인원
기간제근로자 (방재기상지원관)	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1명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방재 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 충청북도청에 파견되어 지역 방재대응 지원 - 기상청에서 발표되는 초단기, 단기, 중기예보의 주기적인 해설 - 위험기상 발생 및 예상 시 방재대응 집중 브리핑 - 기상정보 수집 및 활용방법 자문·교육, 질의답변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직업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정의식(책임감, 사명감) ○ (직무 역량) 기상예보분석 및 방재기상지원
------	---

필요지식	○ 방재기상지원을 위한 예보분석 능력 및 관계기관 소통 능력
------	-----------------------------------

응시 자격 요건	공통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청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자격 요건	<p><다음의 자격요건(경력 또는 자격증) 중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 (자격증) 기상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우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학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소지자 ○ 기상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가산 요건	해당없음

※ 관련분야: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 기상관련 자격증: 기상기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기상감정기사에 한정함
 ※ 기상학분야: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붙임 1]

응시원서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접수번호	채용담당자 기재
------	-----------------	------	----------

1. 인적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병역사항	필 면제 미필 해당없음
전자우편			

2. 교육사항 *우대요건 관련 교육사항 기입				
학력	학위 종류	전공	재학기간	수학구분
			YY.MM.DD.~YY.MM.DD.	졸업/재학/수료/중퇴
			YY.MM.DD.~YY.MM.DD.	졸업/재학/수료/중퇴

3. 경력사항 *응시자격, 우대요건 관련 경력사항 기입				
경력	근무기관(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00기관(00팀)	YY.MM.DD.~YY.MM.DD.		

4. 자격사항 *응시자격, 우대요건 관련 자격사항 기입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번호	자격증 취득일	자격검정기관
	00	*****	2020.12.1.	한국산업인력공단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지원자 : (인/서명)

청주기상지청장 귀하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지원자 부주의에 따른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성요령>>

- ① 인적사항: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기재
- ② 교육사항: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기상학분야 해당 학력 기재 (**해당자만 기재**)
※ 기상학분야: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 ③ 경력사항: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기재 (**해당자만 기재**)
※ 관련분야: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 ④ 자격사항: 기상관련 자격증을 기재 (**해당자만 기재**)
※ 기상관련 자격증: 기상기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기상감정기사에 한정함

※ 자필서명 필수(e-mail로 접수 시, 자필서명하여 스캔한 파일로 제출함)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붙임 2]

자기소개서 (2매 이내)

본인이 지원하게 된 동기, 과거 경력 및 업무의 전문성 등 채용권자별로 채용 직무에 맞는 항목으로 자유롭게 구성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 .

작성자 ○ ○ ○ (인/서명)

직무수행계획서 (2매 이내)

경력 또는 입사 이후 수행할 업무계획 작성 등 채용권자별로 채용 직무에 맞는 항목으로 자유롭게 구성

2024. . .

작성자 ○ ○ ○ (인/서명)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요령

«작성요령»

- 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본 양식 기초로 한글파일로 작성, **작성자 확인 서명 (또는 인) 후 제출**(e-mail 접수 시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 **지원자 서명(또는 인) 누락 시 접수 불가**
- ②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 동기, 관련분야 경력·활동과 향후 직무수행계획 및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③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분량은 각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④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서류전형 평가 대상이 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

공정채용 확인서

본인은 기상청 채용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인)

청주기상지청장 귀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붙임 8]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input type="checkbox"/>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input type="checkbox"/>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4년 월 일

생년월일

지 원 자

(서명)